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기준판매비율에 의하여 가격인하 전에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중인 주류는, 실제 판매시점의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함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법규부가-21, 2024.01.24

▌질 의

- 신청법인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함

질의

- 사업자가 가격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실제 판매되는 인하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 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916, 2023.12.08

▌질 의

-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추진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의 임원 등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합병 후 신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이하 "쟁점비용")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쟁점비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사전법규법인-665, 2023.10.25

▌질 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취득 후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25, 2023.12.05

▌질 의

• 이축권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축권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로서, 이축권 매매대금 수령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소득법 94①(4)마목 및 소득령 158의2(이하 "쟁점규정")의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